

제 2017-BO-0420-8 호



안전인증서

(주)와이즈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 (상갈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인증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압력전송기(Pressure Transmitter)

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

형식·모델

PT852-*

인 증 번 호

17-AV2BO-0420

용량·등급

Ex nA, IIC T4/T5/T6 IP65

정 격

T6: $-20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55^{\circ}\text{C}$, T5: $-20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70^{\circ}\text{C}$, T4: $-20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80^{\circ}\text{C}$

입력: 12~24 VDC, 출력: 4~20 mA

인 증 기 준

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2호)

인 증 조 건

1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-(상갈동)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
2. 그 외 사항은 인증서 뒤쪽 기재

2026년 09월 03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이

